

飛揚島 關聯文件 小考

고 창 석*

〈차 례〉

- I. 머리말
- II. 開拓 이전의 飛揚島
- III. 資料의 整理와 分析
- IV. 맺음말

I. 머리말

이 글은 필자가 최근 접했던 비양도와 관련된 문건들을 한데 모아 정리한 것이다. 비양도 개척사와 관련된 「飛揚島民人等 等狀」 2건과 「飛揚島田稅球弊節目」 1건, 「調査成冊」 1건 등 4건¹⁾과 「各司曆錄」에 수록되어 있는 「訴狀」 1건을 합하여 모두 5건의 문건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오늘날 비양도는 비양항을 중심으로 하여 남동쪽으로 한림항까지는 3.5km, 남쪽으로 협재리까지는 1.8km 떨어진 해상(북위 33°24', 동경 126°47')에 위치해 있다. 동서의 길이가 1.7km이고 남북의 길이가 1.6km인 이 비양도의 면적은 517,696㎡이며 해안선의 길이는 3.5km이다. 지형의 형태가 타원형을 이루고 있는 화산섬으로 북쪽에는 높이 114.1m의 대형 분화구인 속칭 큰 암케가 서사면으로 솟아 있고, 그 옆에는 소형 분화구인 작은 암케가 북사면으로 솟아 있다. 마

*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1) 이 문건들을 접하게 된 것은 김영훈 씨와 신문사 기자들이 함께 찾아와 내용을 풀이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서였다.

을은 남쪽의 비양항을 중심으로 하여 동서로 형성되어 있다. 주택은 협재리와 한림리 방향으로 앉아 있다. 농경지 면적은 7ha인데, 대부분의 주민은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인구는 2002년 정월 현재 60세대, 162명(남자 74명, 여자 88명)으로 조사되었다.²⁾

역사적으로는 고려 원종 14년(1273) 고려·몽골 연합군이 삼별초를 정벌할 때, 그리고 공민왕 23년(1374) 牧胡³⁾를 정벌할 때, 金方慶 장군과 崔瑩 장군에 의해 인솔된 정벌군 船團이 명월포로 상륙하기 위해 전후하여 비양도 인근에 정박한 적이 있다.⁴⁾ 조선 중종 때에는 明月防護所에 城이 없었으나 이 곳이 비양도로 倭船이 가까이 대일 수 있는 곳이라 하여, 그에 대한 방어책으로 성을 쌓기도 하였다.⁵⁾ 또 조선조 고종 21년(1884) 경에 徐氏가 제일 먼저 비양도에 들어가 설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이 해는 이미 개간이 허락되어 입주가 시작되던 때였다.

이 글에서는 5건의 자료를 연대순으로 정리한 다음,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한다.

II. 開拓 이전의 飛揚島

비양도는 사람들이 들어가 살기 아주 오래 전부터 미역 등의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혹은 화살대를 배거나 이를 운반하기 위해 인근 마을 사람들의 내왕이 빈번했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제주 寺奴 車己弘은 갯가에 살면서 고기 낚는 것을 생업으로 하였다. 己卯年(영조 35년, 1759) 3월에 潛女[潛女] 40명이 배를 타고 비양도에 들어가 미역을 따고 돌아오다가 바람을 만나 배가 뒤집혀 가라앉았는데, 己弘이 마침 고기를 낚으러 바다에 나갔다가 이를 목격하고 급히 배를 돌리고 가서 구하여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었고, 壬午年(영조 38년, 1762) 3월에 浦漢[漁夫] 4명이 뗏목 하나에 같이 타고 비양도에 들어가 미역을 따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사나운 바람을 만나 2명은 익사하고 2명은 뗏

2) 강봉수, 「비양도 주요현황자료」, 2002.

3) 元나라 때에 제주도에서 말을 사육했던 몽골인 목동을 말한다.

4) 『高麗史』 金方慶傳·崔瑩傳 참조.

5) 『新增東國輿地勝覽』 關防條 明月防護所[(新增)…古無城 正德庚午 以此地爲飛揚島 倭船泊近處 築之].

목에 몸을 매어 물결 사이에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할 때, 己弘이 또 배를 타고 가서 구하여 살아났고, 戊子年(영조 44년, 1768) 9월에 浦漢 42명이 비양도에서 대[竹]를 베고 돌아오는 길에 바람을 만나 배가 뒤집히자 己弘이 고기를 낚기 위해 바다에 나갔다가 또 이를 목격하고 급히 배를 돌리고 가서 구하였는데, 물결 사이에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하는 사람은 이미 죽은 자와 죽지 않은 자를 막론하고 다 건져서 배에 싣고 돌아왔다. 이 때 죽은 자는 6명이요 살아난 자는 36명이었다.⁶⁾

위 기록은 정조 5년(1781)에 제주를 다녀간 朴天衡 御史의 書啓(復命書)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수록된 세 건의 내용이 시기적으로는 모두 영조 때에 일어난 해상 사고이며, 이 세 건의 사고와 관련된 인명의 구조도 모두 차기홍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다. 즉, 세 건의 기록은 미역을 채취하기 위해, 혹은 대[竹]를 베기 위해 비양도를 왕래하던 사람들이 사나운 바람을 만나 그들이 탔던 배가 전복되거나 뗏목에서 이탈되면서 일어난 사고였다. 이 때 차기홍이 구제한 사람은 모두 78명이었는데, 박천형 어사는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조정에 보고하고 포상을 요청하였다.

“己弘이 전후하여 구제한 인명은 합하여 78명이나 되니, 里任(里長)이 그 사실을 書面으로 보고하였고 浦民들이 그 포상을 狀啓를 올려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臣이 그 사람을 불러서 사실을 상세히 묻고 또 고을 사람들에게 널리 의견을 물어서 그 허실을 탐색해 보았더니, 모두 己弘이 세 차례나 사람을 구제한 것이 확실하다고 하였습니다. 本島에서는 평소애 ‘험한 바다에 나갔다가 배가 파손되는 환난이 종종 일어난다.’고 하니, 이러한 사람을 만약 각별히 논의하여 상을 주지 아니하면, 이는 섬 풍속을 격려하여 권장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청하옵건대, 당해 부처로 하여금 보고하여 처리케 하십시오.”⁷⁾

6) 高昌錫, 「(자료소개)濟州巡撫御史朴天衡의 書啓」, 『濟州島史研究』 8, 1999, 115~116쪽, 「濟州寺奴車己弘 居生於浦邊 釣漁爲業是白如乎 己卯年三月分 潛女四十人 乘船入飛揚島 探薑 遇風覆沒 己弘適釣漁出海 望見之 急回船往 救無一人致死是白遺 壬午年三月分 浦漢四人 共乘一槎 入飛揚島探薑 歸路猝遇狂風 二人滄死 二人結身於筏木 出沒波間之時 己弘又持船隻往 救得活是白遺 戊子九月分 浦漢四十二人 刈竹於飛揚島 歸路遇風覆船 己弘釣漁次出海 又望見急回 棹往救之 波間出沒之人 毋論已死者未死者 盡爲拯濟 同載而歸 死者六人 得活者三十六人是白如乎」.

7) 원책 114~115쪽, 「己弘之前後所濟活人命 合爲七十八名 里任陳報其實狀 浦民狀請其褒賞 故臣招見其人 詳問事實 又博詢於邑人 探其虛實 則皆已爲己弘之三次濟人 果是的實是如爲白臥乎所 本島素稱 險海敗船之患 種種有之 此等之人 若不各別論賞 則恐無以激動島俗 請令該曹稟處爲白齊」.

당시 병조판서 鄭好仁도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本州 寺奴 차기흥이 전후하여 세 차례나 물에 빠진 사람을 구제한 수효가 자그마치 78명이나 되니, 각별히 논의하여 상을 주지 아니하면, 섬 풍속을 격려하여 권장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청하읍건대, 당해 부처로 하여금 보고하여 처리케 하시되, 전례를 조사해 보았더니, 15명 이상을 구제한 사람에게는 資級(品階)을 올려주는 은전을 베풀었습니다. 지금 이 차기흥은 세 차례나 물에 빠진 사람을 구제한 바 이미 이와 같이 그 수가 많으니 다른 사람의 예에 의하여 시상하고, 또 이미 寺奴인 경우에 천인의 신분을 면하여 良人이 되는 것[免賤]을 허락하도록 법전에 실려있으니, 차기흥을 법전에 따라 천인의 신분을 면하여 良人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아뢴대로 하라” 하였다.⁸⁾

또 『濟州啓錄』 咸豐 3년(철종 4년, 1853) 11월 19일자에는 다음과 같은 狀啓⁹⁾ 내용도 보인다.

“금년 11월 18일에 도착한 大靜縣監 尹瑗의 급보 내용에 의하면, 방금 管下 遮歸鎮 訓導 河光吉의 告目[보고서]을 접수하였더니, 그 내막이 이러하였습니다. ‘鎮下인 飛揚島의 官竹을 실어오기 위해 頭毛里 營旗牌 佐汝恩 貢生 洪連得, 造水里 旗牌 姜士哲, 遮歸鎮卒 吳海僉 등 4명이 함께 자그마한 배에 타고 돌아오다가 갑자기 사나운 바람과 거센 파도를 만나 배를 제어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바다에서 익사하였으나 시체는 아직 건져 올리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4명의 인물이 일시에 익사하여 듣기에 매우 놀랍고 비참하여 기어이 건져 올리도록 세 고을 각 포구에 공문을 발송하여 엄히 당부하고, 恤典은 시신을 건져 올리기를 기다려 지령을 내릴 계획임으로, 연유를 우선 급히 보고하는 것이니, 그 까닭을 잘 여쭙실 일입니다.¹⁰⁾

8) 翼載, 97~98쪽, 「又所啓 濟州御史朴天衡別單中 本州寺奴車己弘 前後三次 拯活人命之數合爲七十八名之多 若不各別論賞 則無以激勸島俗 請令該曹稟處矣 取考前例 則拯活十五名已上者 施以加資之典 今此車己弘 三次所拯 既如是數多 所當依他例施賞 而既是寺奴 則許其免賤 載在法典 車己弘依法典 免賤如何 上曰 依爲之」.

9) 狀啓는 지방 관리가 임금에게 제출하는 보고서 내지 문의서를 말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임금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承政院을 통해서 간접으로 임금에게 전달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본문의 장계는 바로 두 번째 종류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에게 잘 전달해 달라는 규격화된 문구로서 끝을 맺고 있다. 홍기문, 『이두연구』, 377쪽.

10) 今十一月十八日 到付大靜縣監尹瑗馳報內 卽接管下遮歸鎮訓導河光吉告目則已爲鎮下飛揚島官竹載來次 頭毛里營旗牌佐汝恩 貢生洪連得 造水里旗牌姜士哲 遮歸鎮卒吳海僉等四名共乘小舡 回來是如加 猝遇風濤 不能制船 仍爲泔沒於中洋 而屍體姑未拯得是如爲有置 四名人物之一時泔沒 聞甚驚慘 期於拯得之意 三邑各浦良中 發關嚴飭 而恤典段 待鉤拯題給計料爲白乎旆 緣由爲先馳啓爲白臥乎事是良爾 詮次善啓向教是事 咸豐三年十一月十九日.

위 기록은 비양도에서 官竹을 싣고 돌아오던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 익사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제주·대정·정의 세 고을 각 포구에 공문을 띄워 계속하여 수색하도록 당부하고, 익사자에 대한 恤典도 시신을 찾은 뒤에 지급하도록 지령을 내리겠다고 하였다. 홀전은 나라에서 이재민을 구제하는 은전을 말한다.

官竹은 史書에 箭竹·長竹 등으로도 표기되었다. 즉, 史書마다 비양도에는 '전죽이 많다',¹¹⁾ '전죽이 난다'¹²⁾고 하였다. 특히 『南槎錄』에는 '섬에서는 전죽이 생산되는데, 세 고을이 모두 여기에서 베어다 쓴다.'¹³⁾고 하였다. 또 『知瀛錄』에는 '비양도에 전죽이 잘 자라서 매년 수천 못[東]을 베어 내는데, 이른바 枯竹이라 하는 것이 이것이다.'¹⁴⁾라고 하였으며, 『耽羅營事例』에는 長竹의 항목에, '매년 5백 丹으로 한정하여 明月의 비양도와 차귀도에서 베어 내어 진상한다.'¹⁵⁾고 하였다. 바닷가에서 나는 대나무는 海竹이라고도 하며 견고하여 화살대를 만드는데 적합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정조 24년(1800) 정월에 沈樂洙 어사가 발급한 『管邑各樣球弊節目』에는 箭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細則이 정해져 있다.

“비양도와 차귀도는 곧 箭竹의 禁養地이다. 근래 법으로 못하게 한 禁制가 해이하여 혹은 불을 놓아서 태우고 혹은 靑竹을 죽여서 베어내 거의 민등민등함에 이른 것도 큰 폐해에 관계된다. 당해 鎮(明月鎮과 遮歸鎮)에서 단속하여 금지하되, 범한 자는 적발되는 대로 刑杖을 가하여 귀양보낼 것.”¹⁶⁾

- 11) 『耽羅志』 濟州牧 山川條 : 飛揚島[在州西六十里 水路五里 周十里 多箭竹], 『耽羅誌草本』 濟州牧 山川條 : 飛揚島[在州西六十里 明月鎮下 周十里 高麗穆宗十六(十六은 十의 착오)年 有山湧于耽羅海中 卽此島云 其上多箭竹 舊有羔圈 今廢].
- 12) 『南宦博物』 誌島條에는 「戊有飛揚 與明月相對 水路五里 周十里 產箭竹 崔瑩討哈赤時泊此 破賊於明月」이라 하여, “서북방[戊]에 비양도가 있는데 명월과 서로 마주 대하고 있다. 수로가 5리이고 둘레는 10리인데, 전죽[화살대]이 난다. 崔瑩이 하치[哈赤]를 토벌할 때 이곳에 정박하였다가 명월에서 적을 격파하였다.” 하였다.
- 13) 『南槎錄』에는 「(前略) 夕入明月防護所 對城海中 有飛揚島 島上出箭竹 三邑皆取用于此云 (中略) 按地誌 飛揚島在州西海中 州牧羔于此云」이라 하였다.
- 14) 『知瀛錄』 瀛洲十景圖 明月所條에 「飛揚島中 長養箭竹 每年刈取數千束 所謂自枯竹此也」라 하였다.
- 15) 『耽羅營事例』 濟州牧 工庫條 : 長竹[每年五百丹爲限 明月飛揚島遮歸島 刈取而進上 織涼竹則每年四月 旌義縣札請取用].
- 16) 「飛揚島及遮歸島 卽箭竹禁養之地也 近來法禁解弛 或縱火而焚之 或殺靑而斫之 幾至濯濯者 亦關巨弊 自該鎮旬檢禁斷 犯者隨現 刑配是齊」(庚申正月 日 中殿莊莊 沈御史).

위 내용에 보이는 禁養地의 禁養은 원래 산림 보호에 관한 용어로, 禁은 지정된 산림에 수목의 벌채나 분묘의 설치, 농지의 개간 등을 금하는 것을 말하고, 養은 소나무의 재배와 육성을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소나무 대신에 전죽이 보호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불을 놓아 대를 태우거나 청죽을 죽여서 배어내는 일을 금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전에는 비양도에서 양(염소)을 방목했던¹⁷⁾ 사실도 地誌類 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또한 『耽羅巡歷圖』에는 임오년(숙종 28년, 1702) 10월 11일에 사슴을 생포하여 계미년(숙종 29년, 1703) 4월 28일에 비양도에 옮겨 방사하는 '飛揚放鹿'의 도면도 보인다.

그런데 비양도의 생성과 관련해서는 『高麗史』五行志의 다음과 같은 기사가 주목된다.

“목종 5년(1002) 6월에 탐라에서 산에 네 개의 구멍이 뚫어지며 붉은 물이 솟아 나오다가 5일 만에야 멎었는데, 그 물이 모두 용암[瓦石]이 되었다.

10년(1007)에 탐라의 바다 가운데에서 瑞山¹⁸⁾이 솟아 나왔다고 하므로, 大學博士¹⁹⁾ 田拱之를 보내어 이 사실을 조사하게 하였다. 탐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산이 처음 나올 적에는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고 날이 캄캄해지면서 땅의 진동함이 우레 소리와 같았으며, 무릇 7주야 만에야 날이 비로소 개였다. 산의 높이는 백여 丈쯤 되고 주위는 40여 리 가량 되었다. 초목은 없고 연기만 산 위에 자욱히 덮였는데, 이를 바라보면, 石硫黃과 같아서 사람들이 두려워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전공지가 직접 산밑에까지 가서 산의 형상을 그려 왕에게 바쳤다.”²⁰⁾

위 내용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그 위치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었다. 즉, 숙종 29년(1702)에 제주 목사를 지낸 李衡祥은 『南宦博物』誌島條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17) 『新增東國輿地勝覽』濟州牧 山川條에는 「飛揚島[在州西八十里 水路五里 周十里 有羊場] 今屬大靜縣」(州 서쪽 80리에 있는데, 수로가 5리이고 둘레가 10리이다. 양을 기르는 목장이 있다. 지금 대정현에 속한다)이라 하였고, 『耽羅志』牧養條에는 「羔厠[牛島 飛揚島俱有之]라 하였다.

18) 瑞山은 상서로운 산으로 풀이할 수도 있으나 地誌類 古蹟條에 등에 瑞山을 주체어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도 그대로 따랐다.

19) 高麗 때 國子監의 종7품 벼슬. 太學博士라고도 쓴다. 『高麗史』百官志 成均館條 참조.

20) 「穆宗五年六月 耽羅山 開四孔 赤水湧出 五日而止 其水皆成瓦石 十年 耽羅瑞山湧出海中 遣大學博士田拱之 往視之 耽羅人言 山之始出也 雲霧晦冥 地動如雷 凡七晝夜始開霽 山高可百餘丈 周圍可四十餘里 無草木 烟氣羃其上 望之如石硫黃 人恐懼不敢近 拱之躬至山下 圖其形以進」.

있다.

“竹島(遮歸島) 남쪽에 盖波島(加波島)가 있는데, 수로가 30리이고 둘레는 40리이다. 수목은 없고 잡초가 무성하여 私馬場으로 삼았다. (두 차례 화산폭발 기사 생략)²¹⁾ 輿地誌에는 ‘지금 大靜(縣)에 속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이 섬(가파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한다. 『남사록』에는 ‘濟州(牧)의 飛揚島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 비양도의 둘레가 10리에 차지 아니하고, 또 牛島 외에 원래 3·40리의 둘레를 가진 섬은 없다. 『고려사』에 ‘〈전공지가〉 형상을 그릴 때에 40여 리’라고 한 것은 이 섬(가파도)이 아니면 비슷한 것이 없다. 古老나 吏民들 사이에 전해 오는 이야기가 없으니, 능히 묻혀 버릴 만하다.”²²⁾

輿地誌 즉, 『新增東國輿地勝覽』 濟州牧 古蹟條에는 서산의 용출 지역을 막연히 ‘지금 대정현에 속한다.’²³⁾고 만하여 구체적인 지명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비해, 『남사록』에는 비양도라고 거론하였다.²⁴⁾ 그러나 이형상 목사는 비양도의 둘레가 10리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고려사』에 언급한 둘레 40여 리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는 우도를 제외하면 가파도 밖에 없다고 하였다. 즉, 이형상 목사는 서산의 용출 지역을 가파도로 비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비양도와 가파도 외에도 牛島 혹은 안덕면의 軍山이라고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²⁵⁾ 그러나 이 문제는 지질학적 측면에서의 검토가 절실히 요구된다.

21) 앞의注 내용과 같다.

22) 『竹島南有盖波 水路三十里 周四十里 無樹木多茂草 爲私馬場 高麗穆宗五年六月 有山湧海中 山開四孔 赤水湧出 五日而止 皆成瓦石 十年 瑞山湧出海中 遣太學博士田拱之 往視之 人言 山之始出也 雲霧晦冥 地動如雷 凡七晝夜 始開霽 山可百餘丈 周圍四十餘里 無草木 烟氣常霧其上 望之如石瓠黃 拱之不敢近(拱之不敢近은 人恐懼不敢近 拱之의 착오) 躬至山下圖形以進 輿地誌曰 今屬大靜 疑是此島 而南槎錄以濟州之飛揚島當之 飛揚之周不滿十里 且牛島之外 元無三四十里可回之島 麗史所圖四十餘里者 非此無可彷彿 而古老吏民無有傳說 堪可埋沒.

23) 『新增東國輿地勝覽』 全羅道 濟州牧 古蹟條(瑞山)에 「今屬大靜縣」이라 하였다.

24) 『南槎錄』 辛丑 10월 17일자 明月防護所 내용에 「按地誌(중략) 高麗穆宗十六年 有山湧于耽羅海中者 卽此島云」이라 하여, “地誌에 의하면, 고려 목종 16년(10년의 착오)에 산이 탐라의 바다 가운데에서 솟아났다고 한 것은 곧 이 섬이라고 하였다.” 하였다.

25) 中村新太郎(1925), 『濟州火山島雜記』, 『地球』 4, 325~336쪽. 그는 1002년의 화산 분출을 비양도로, 1007년의 화산 분출을 군산으로 비정하였다. 또 高炳五의 『元大靜郡誌』 奇聞傳說條에도 「高麗穆宗十年丁未軍山湧出」이라 하였다.

Ⅲ. 資料의 整理와 分析

1. 等狀

1) 飛揚島民人等等狀(55.5cm×95.5cm)²⁶⁾

右等狀事段 盖此島在於舊右面中洋 而所管五里 則洙源·翰林·德浦·挾才·孟令也 本以多竹之島 自古禁地 而島中有事 則五里一體應役是加尼 去甲申年分 特下/朝家處分 開拓此島 近里窮民 結幕入居 資生者 但是隨風收藻 作農爲業矣 近者五里 稱以渠境 所產風藻 私自賣用 十室殘洞 至於失業 何以支保哉 大抵率土之濱 莫非王民 而島中設有公/私事 島民本是應役是乎遺 五里段別無所管 而奪境私賣 都是以強凌弱之習矣 茲以齊聲仰訴爲去乎 洞燭教是後 特下嚴題 私賣公地 永爲禁斷 俾無殘民失業之冤 千萬祝手爲只爲/

行下向教是事

郡使道 處分

庚子四月 日

郡使(押)

(題辭) 飛揚島海中浮島也 己未開拓/前 該島所產之物 附近五里之所管 亦或/可也是矣 開拓以後 則貧民結幕居/生 所產之物所業 理所當然是遺 以他島/言之 本島牛島 大靜加波島 旌義知歸/島所產之物 該島居生之民 皆爲所管是/去乙 何獨此島不其然 而致此呼訴乎 以他/島例言之 此島之所產風藻 五里民人/等之賣用云者 萬不穩當 即使該島之民收採後 以爲/作農 毋至更煩 宜當向事/

六日 面任及/鎮將(濟州郡印(4.5cm×4.5cm)이 5곳에 날인됨)

2) 飛揚島民人等等狀(55.5cm×95.5cm)

右等狀事段 盖此島在於舊右面中洋 而所管五里 則洙源·翰林·德浦·挾才·孟令也 本以多竹之島 自古禁地 而島中有事 則五里一體應役是加尼 去甲申年分 特下/朝家處分 開拓此島 近隣窮民 結幕入居 資生者 但是隨風收藻 作農爲業矣 近者五里 稱以渠境 所產風藻 私自賣用 十室殘洞 至於失業 何以支保哉 大抵率土之濱 莫非王民

26) 자료 내용 중 / (빗금)은 행이 바뀌는 곳이며, 띄어쓰기, 가운데 점은 필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而島中/設有公私事 島民都是應役是乎遺 五里段別無所管 而奪境私賣 都是以強凌弱
之習矣 茲以齊聲仰訴爲去乎 洞燭教是後 特下嚴題 私賣公地 永爲禁斷 俾無殘民失
業之/冤 千萬祝手爲只爲/

行下向教是事

行使道 處分

庚子四月 日

使(押)

(題辭) 該島原居民 你是/主人 則豈可全任於/五里耶 共相和同/ 以爲生業向事/
七日 在明月鎮/巡捕領將及五里/洞中<濟州牧印(4cm×4cm)이 3곳에 날인됨)

위의 1)· 2) 두 等狀²⁷⁾은 庚子年 즉, 光武 4년(1900) 4월에 비양도에 사는 사람
들이 郡使道(郡守)²⁸⁾와 行使道(牧使)²⁹⁾에게 각각 제출했던 일종의 진정서이다. 그
런데 위 두 건의 등장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거의 다 일치한다. 다만 같은 의미의
두 용어 즉, 등장 1)의 '近里와 本是'가 등장 2)에서는 '近隣과 都是'로 바뀌었을
뿐이다. 등장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이를 풀이해보면 다음과 같다.

“대체로 이 섬은 舊右面 바다 가운데에 있는데, 洙源·翰林·德浦·挾才·孟令 등
인근의 5개 마을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본래 대[竹]가 많은 섬으로, 예전부터 <일반인
의 출입> 금지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섬 안에 일이 있으면, 다섯 마을이 모두 노
역에 응하였습니다. 지난 甲申年(고종 21년, 1884)에 특별히 나라에서 처분을 내리

27) 等狀은 관청(지방관)의 판결이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관청에
올리는 일종의 민원문서이다. 그 내용은 소송이나 청원, 진정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문서에는 말미에 이를 올리는 사람들의 이름을 連書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등장들에는 이것이 생략되어 있다. 문서의 처리 과정은 당사자들이 지
방관이나 관계 관청에 등장을 올리면, 해당 관청에서는 그 등장의 내용을 검토한 뒤,
이에 대한 처분(판결)을 내린다. 이를 題音, 또는 題辭라고 한다. 제목 내용은 등장 좌
변의 하단 여백에 기록하는데, 그 내용이 많아서 여백이 모자라면 뒷면에까지 계속해
쓰기도 하고, 별지를 첨부하여 쓰기도 한다. 제목을 내린 등장은 그 등장을 올린 당사
자들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그 처분에 대한 증거 자료로서 소중히 보관하
게 된다.

28) 당시의 郡使道 즉, 군수는 金熙育였다. 그는 광무 원년(1899) 12월에 도입하였다가 광
무 5년(1901) 정월에 旌義郡守로 전직되었다.

29) 당시의 行使道 즉, 목사는 李庠珪(裁判所判事 겸임)이며, 그는 광무 3년(1899) 10월에
도입하였다가 광무 5년(1901) 정월에 탐복한 것으로 조정에 알려져 파면되었다. 당시
는 擘稅官 姜鳳憲이 섬에 들어오면서 稅弊와 敎弊가 일시에 발생하여 그 폐해가 컸다.

섬을 개척하도록 하였는데, 가까운 이웃(마을)의 가난한 백성들이 들어가 막사를 짓고 살면서 바람에 밀려오는 海藻를 거두어 농사를 짓는 것으로 생업을 삼았습니다. 근자에 다섯 마을에서 자기네 지경이라 이르며 생산되는 風藻를 사사로이 팔아 쓰므로, 열 집 정도의 쇠잔한 동네는 생업을 잃기에 이르렀으니, 어떻게 지탱하여 보전하겠습니까?. 대체로 온 나라 지경 안은 임금의 백성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섬 안에 만일 공공의 일이나 사사로운 일이 있으면 섬사람들이 모두 그 일에 응하였고, 다섯 마을에서는 별로 관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경을 빼앗아 사사로이 파는 것은 본시 강자가 약자를 업신여기는 습속입니다. 이에 일제히 한 목소리로 우러러 하소연함으로써 통촉하신 뒤에 특별히 엄중한 지령을 내려, 사사로이 公地를 파는 것을 영원히 금지하여 쇠잔한 백성들이 생업을 잃는 청원함이 없도록 천만 祝手하므로, 분부하실 일입니다. 使道의 처분을 바랍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서두에는 비양도의 위치를 舊右面(지금의 한림읍) 바다 가운데라 하였고, 증전에는 洙源·翰林·德浦(獨浦의 訛音, 瓮浦)·挾才·盂畝(金陵) 등 5개 마을에서 비양도를 관리해 왔다고 하였다. 그런데 원래 대[竹, 화살대]가 많은 섬이므로, 예전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었고, 일이 있을 때만 5개 마을에서 이를 감당해 왔다고 하였는데, 그 일이란, 앞서 본 화살대나 미역의 채취, 또는 풍조를 수거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한다.

그런데 위 두 건의 등장 내용에 따르면, 이 섬을 개간하도록 나라에서 訓諭를 내린 것이 갑신년(고종 21년, 1884)이며, 이 때부터 비양도의 인근 마을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가 막사를 짓고 살면서, 바람에 밀려오는 海藻(風藻)를 수집하여 농사를 짓는 것으로 생업을 삼았다고 한다. 열 집 정도의 마을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근자에 이르러서는 비양도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과 주변 5개 마을 사람들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예전부터 비양도를 관리해 오던 5개 마을 사람들이 자기네 지경이라는 전례를 내세워 비양도에서 생산되는 풍조를 사사로이 팔아 쓸 뿐만 아니라 사사로이 경지를 빼앗아 팔아버리는 것이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비양도에 입주하여 사는 열 집 정도의 사람들이 생업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비양도 사람들의 진정 내용은 비양도에 사람들이 입주한 이후부터는 섬 안에 일이 생기면 자신들이 전부 감당하였고, 5개 마을 사람들은 전연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5개 마을 사람들이 지경(경지)을 빼앗아 사사로이 파는 일까지 생각하고 있으니, 관청에서 지령을 내려 이러한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등장을 제출하여

진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등장 내용을 살펴 본 군사도와 행사도는 각각 다음과 같이 처분(판결)을 내리고 있다. 먼저 군사도의 판결 내용을 풀이해 보면,

“비양도는 바다 가운데 떠 있는 섬이다. 기미년(철종 10년, 1859)의 개척 이전은 그 섬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부근의 다섯 마을에서 관리한 것도 가능한 일이었으나, 개척 이후는 곧 가난한 백성들이 막사를 짓고 살면서 소산물 채취를 생업으로 삼은 것도 이치가 당연한 것이다. 다른 섬으로 말하면, 本島의 牛島, 大靜의 加波島, 旌義의 知歸島³⁰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그 섬에 사는 백성들이 모두 관리하는데, 어찌 홀로 이 섬만이 그러하지 아니해서 이와 같이 진정하기에 이르렀는가? 다른 섬의 예로 말하면, 이 섬에서 생산되는 풍조를 다섯 마을 사람들이 팔아 쓴다는 것은 전연 온당하지 못하다. 즉, 그 섬의 백성들로 하여금 <풍조를> 거두어들이 뒤애 농사를 짓게 하되, 다시는 번거롭게 하지 말라.”

라고 하여, 같은 달 6일자로 舊右面 面任과 明月鎭 鎭將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역시 같은 달 7일자의 행사도의 판결은,

“그 섬에 오래 전부터 사는 백성인 너희들이 주인이니, 어찌 다섯 마을에 전적으로 일을 맡길 수 있겠는가? 함께 서로 화합하여 생업으로 삼을 일이다.”

라고 하여, 명월진의 巡捕鎭將³¹과 다섯 마을 洞中에 지령을 내리고 있다. 즉, 군사도는 ‘기미년(철종 10년, 1859)의 개척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변 5개 마을 사람들이 관리하였지마는 지금부터는 비양도 백성들로 하여금 풍조를 거둬들여 농사를 짓게 하되, 다시는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여, 우도·가파도·지귀도의 예를 들어 비양도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었고, 행사도는 ‘비양도 사람들이 주인이라 하면서도 서로 화합하여 생업을 삼으라.’고 하여, 주변 마을과의 화합을 명하였다.

30) 우도와 가파도는 현종 8년(1842) 李源祚 목사 때에 개간이 허락되었으나 실제 개간과 입주가 이루어진 것은 1~2년 뒤부터이다. 高昌鎬, 『歷史와 設村』, 『牛島誌』, 1996, 75~109쪽 참조. 지귀도에 대해서는 미상이나 吳文福 선생의 敎示에 의하면 보리가 잘되었다고 한다.

31) 巡捕는 巡檢으로, 조선 말기 최하급의 경찰을 가리킨다. 고종 31년(1894)에 左·右捕盜廳을 합쳐서 警務廳을 신설하고 警務使·警務官·總巡·巡檢 등을 두었으며, 이듬해에는 23府에도 순검을 두었다. 융희 원년(1907)에 그 명칭을 巡査로 고쳤다. 鎭將은 그 장교이다(『고종실록』 고종 31년 7월 14일조).

어떻든 위 등장 내용에서 유의되는 것은 비양도의 개척 시기가 갑신년(고종 21년, 1884)부터라고 하는 사실이다.

2. 飛揚島田稅球弊節目(27cm×23.2cm)

(표지) 舒川

李等

光武五年辛丑五月 日

飛揚島田稅球弊節目

(내표제) 飛揚島田稅球弊節目

卽接飛揚島田民等訴于/察理使道 節該內 甲申年自/本營 因承/ (공란)朝家開拓之令 募民起墾于/本島 厥田分六等 田民更捧錢/二千二百五十兩 附之公用 成給節/目 至于後等 謂以土價 猶輕加捧/一千兩 又後等隨捧塩田價三百/兩 三度價本若是夥 然而到/今 土理漸疎 穀不稔而草將/蕪 民方愁歎之中 稅官使教/人定舍音 執卜捧錢二百兩 前後/殆近四千兩 而尤其是長官之所/受價本 則其監公田 不可同年/而語矣 稅官謂以會是公田 濫/抑而收稅 豈不稱冤 二百兩錢/ 稅官固當 (공란)京納 民不可請推 而/恐或有後來因此更執之弊/ 將爲節目成給 以爲區以別之/之道 云云 則島田永無更侵之意/ 成節目以給事 (공란)委題故 取考/甲申田案 及前後文蹟 則元價/之多 誠如狀辭 稅官雖曰公土 重/價買得 實爲私田 此土之私田執/稅 非其法例 民固稱冤 本島/稅款 永勿舉論之意 茲成節/目 後來君子 亦有所參量存/焉者

辛丑五月 日

兼使(押) (濟州牧裁判所印)

본 節目³²⁾은 신축년 즉, 광무 5년(1901) 5월에 李在護 목사(裁判所判事 겸직)³³⁾가

32) 원래 절목은 어떠한 사안의 시행 세칙을 말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은 대체로 절목을 작성하게 된 배경을 밝힌 前言과 條目으로 된 細則으로 구성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 절목에는 前言만 있고 구체적인 세칙 내용은 없다. 절목의 표지에는 우측으로부터 '舒川, 李等, 光武五年 辛丑 五月 日(官印 날인), 『飛揚島田稅球弊節目』'이라고 상하로 줄을 옮기며 써여져 있는데, 내용 중 李等の '等'은 목사의 임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李等은 곧 이재호 목사의 임기를 가리키며, 舒川(충남 서천군)은 그의 본향이다. 4장 1책으로 된 필사본이며, 표지와 내용에는 濟州裁判所印(5.5cm×5.5cm)이 모두 8곳에 날인되어 있다.

33) 이재호 목사는 광무 5년(1901) 4월에 부임하였다가 이듬해 6월에 탐학한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파직되었다.

비양도의 田稅에 대한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그의 직권으로 작성하여 비양도에 발급한 것이다. 내용을 풀이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방금 비양도 농민들이 察理使道에게 올린 等訴를 보았더니, 그 내용에, ‘甲申年에 本營(濟州營)에서는 나라에서 개척하라는 훈령을 받으면서부터 백성들을 모집하여 本島(飛揚島)를 개간하고 그 밭을 6등급으로 나누었는데, 농민들에게는 다시 돈 2천 2백 50냥을 받아서 이를 공용에 부치도록 절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後等に 이르러서는 땅값이라 이르며 오히려 1천 냥을 더 받았고, 또 後等이 鹽田價로 3백 냥을 받음에 따라 세 번에 걸쳐 받은 값이 이와 같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땅의 기름지고 메마름이 점차 거칠어지는 상태여서 곡식이 익지 아니하고 잡초가 무성해지니, 백성들이 한창 근심하며 한탄하던 터에, 擄稅官이 敎人을 마름[畝音]으로 정하여, 작황을 조사하고 세금을 매겨 2백 냥의 돈을 받아가니, 전후하여 거의 4천 냥에 가까웠습니다. 더욱이 이것이 長官이 받는 값이라면 그 公田을 감독한 것과는 두 가지의 차이가 커서 같이 들어 논할 수가 없는데, 봉세관은 결국 이를 公田이라 이르며 마구 억압하여 세금을 거두었으니, 어찌 칭원하지 않겠습니까? 2백 냥의 돈은 본디 봉세관이 서울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니, 백성들은 요청하여 찾을 수도 없고, 혹 뒤에 와서 이로 인해 다시 세금을 매기는 폐단이 있을까 염려되므로, 절목을 만들어 주어서 이를 구별하는 방도로 삼아야 합니다.’ 하였다.

그러니, 섬 안의 밭을 영원히 다시 침탈하지 말라는 뜻으로 절목을 만들어 주도록 지령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甲申年의 田案(토지대장)과 전후의 文籍을 가져다 조사하였더니, 元價의 많음이 참으로 소장의 내용과 같았다. 봉세관은 비록 公土라고 하지만 비싼 값으로 샀으니, 실은 私田인 것이다. 이 땅의 사전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그 法例가 아니다. 백성들이 진실로 칭원해 할 것이니, 本島의 조세 조항은 영원히 거론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에 절목을 작성하는 것이므로, 뒤에 오는 君子(敎使)도 이를 참고하고 적당히 고려하여 마음에 뜻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위 節目에서는 비양도 농민들이 察理使道³⁴⁾에게 올렸던 等訴(等狀)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으로 서두가 시작되고 있다. 인용된 등소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갑신년에 濟州營에서 나라에서 개척하라는 훈령에 따라 백성들을 모집하여 비양도를 개간하고, 그 밭을 6등급(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는 『調查成冊』 내용을 참고할 것)으로 나누어서 농민들로부터 돈 2천 2백 50냥을 받아 이를

34) 당시의 찰리사도는 朴用元이며, 그는 행목사 겸 재판소판사였다. 광무 2년(1898) 3월에 도입하였다가 이듬해 기해 10월에 교체되었다.

公用에 부치도록 절목을 만들어 주었는데, 後等³⁵⁾에 이르러서는 땅값이라 이르며 1천냥을 더 받았을 뿐만 아니라 鹽田價로 또 3백 냥을 받았다고 하였다.

둘째는, 봉세관이 敎人을 마름으로 정하고 세금을 매겨 2백 냥의 돈을 받았으므로, 전후하여 비양도 사람들로 부터 받은 돈이 거의 4천 냥에 이른다고 하였다. 특히 봉세관은 이를 公田이라 이르며 마구 억압하여 세금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2백 냥의 돈은 봉세관이 서울에 납부해야 하는 돈이므로 백성들은 이 돈을 요청하여 찾을 수가 없고, 혹 뒤에 와서 이로 인해 다시 세금을 매기는 꾀단이 있을까 염려되므로, 절목을 만들어 주어서 이를 구별하는 방도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等訴의 내용에 따라 찰리사도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갑신년 개간 당시에 작성되었던 토지대장과 이 때를 전후하여 작성했던 다른 문적들을 가져다 조사해 보았더니, 등소의 내용과 같이 元價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경작지는 비양도 농민들이 비싼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公土가 아니라 私田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해서 비양도의 전세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체 거론하지 말라는 내용의 절목을 작성해 주었던 것이다.

봉세관은 세금을 받아들이는 일을 맡은 內藏院³⁶⁾ 소속의 벼슬아치이다. 내장원은 고종 32년(1895 乙未)에 설치되었으며, 왕실의 보물과 대대로 전해 오는 莊園 등을 관리하였다. 『高宗實錄』 광무 4년(1900) 8월 31일자에 의하면, 이 해에 봉세관 13인을 두었는데,³⁷⁾ 이들이 전국 각지에서 收稅 활동을 벌이며 많은 부작용을 낳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내장원 봉세관 강봉헌이 조사위원으로 임명된 것은 『承政院日記』에는 광무 4년(1900 庚子) 12월 20일(양력 광무 5년 2월 9일)자, 『고종실록』에는 광무 5년(1901 신축) 2월 8일(음력은 경자 11월 18일)자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度支部 大臣 閔丙奭이 아뢰기를, ‘각 도의 정식 공납으로 말하면 원래 정해진 법이 있는데, 제주목인 경우에는 한결같이 甲午更張 이후부터 징수하는 각종 세금에 대하여 많은 지, 적은 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 안의 모든 백성들이 다같이 부담하여야 할 처지이므로, 마땅히 조정하는 조치가 있어야

35) 後等은 후임 목사를 뜻한다. 따라서 갑신년 개간 당시의 목사는 沈賢澤이었고, 후임 목사는 洪圭였다.

36) 내장원은 『增補文獻備考』 職官考 更張官制 內藏院條에 「今上三十二年 設內藏院 管理王室寶物世傳莊園…四年增置捧稅官十三人」이라 하였다.

37) 『고종실록』 광무 4년(1900) 8월 31일자에, 「布達第六十二號 宮內部官制中改正[內藏院捧稅官十三人增置]件領布」라 하였다.

하겠으니, 내장원 봉세관 강봉헌을 조사위원으로 임명하여 사실대로 조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이를 허락하였다.”³⁸⁾

즉, 탁지부 대신 민병석의 上奏에 의하여 제주목에 책정된 갑오경장 이후의 각종 세금이 많은 지, 적은 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장원 봉세관 강봉헌을 조사위원으로 임명하여 사실대로 조사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강봉헌은 광무 4년 9월경에 이미 제주도에 들어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이 때에 와서는 갑오경장 이후 제주도에 매겨진 세금의 과다를 조사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해 다시 강봉헌에게 조사위원을 겸하도록 한 것이다. 즉, 봉세관의 입도 시기에 대해서는 다음의 訴狀이 참고된다.

3. 訴狀

光武五年五月 日

訴狀

全羅南道濟州郡居 崔在河 年

伏以 矣身이 本郡飛揚島舍音差帖을 陰曆昨/年九月分에 得蒙이온바 一遵捧稅官知委와 該島所在田土數斗落과 茅草剪把數를 查/檢호옵는데 自九月至于十二月까지 恪勤舉/行이온바 甚至於島中形便을 圖繪懸註호와/ 一力奉公이옵거늘 不意該島居호는 高成鶴/爲名者가 敢生叵測之心호야 從中沮戲호며/ 所謂該舍音을 橫奪以去호오니 豈有如許法/意乎잇가 不勝抑忒호와 茲以仰訴호오니 洞/燭호신 後에 訓令于捧稅官호시와 嚴懲高也/의 無據悖習호옵고 該島舍音을 使矣身復屬/而更無呼冤케호시를 伏祝/

證據物은 添附함

光武五年五月 日

崔在河

內藏院卿閣下

(題辭) 詳查公決向事 七日 捧稅官

38) 『高宗實錄』과 『承政院日記』 등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度支部大臣閔丙奭奏 各道正供 自有定章 而至於濟州牧 一自更張以後 各稅之收捧 莫知盈縮 其在率普同供之地 宜其有調整之舉 內藏院捧稅官姜鳳憲 調查委員差下 使之從實查櫛 何如 允之」(『承政院日記』에는 「允之」 대신에 「敢奏 奉旨依奏」라 하였다).

위의 訴狀은 『各司牒錄』³⁹⁾에 수록된 문건 내용이다. 광무 5년(1901) 5월에 전라남도 濟州郡에 사는 崔在河가 內藏院卿에게 올렸던 일종의 진정서인 것이다. 그 내용은 풀이해 보면 이러하다.

본인(최재하)이 비양도 마름[舍音]⁴⁰⁾의 差帖[임명장]을 작년 즉, 광무 4년(1900) 음력 9월께에 받고, 한결같이 봉세관의 지시에 따라 비양도 소재 토지의 마지기수와 茅草[속칭 새]를 베는 把數[면적]⁴¹⁾를 조사하는데 9월부터 12월까지 몇 달을 소요하며 부지런히 시행하였고, 심지어 섬 안의 형편을 그림(지적도?)으로 그리고 注를 달아가며 공무를 수행하였는데, 뜻밖에 그 섬에 사는 高成鶴이란 자가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을 품고 중간에서 방해하며, 본 마름에게 도리에 어긋나게 가로채어 빼앗아 갔다고 하니, 어찌 이와 같은 법의 취지가 있겠느냐고 하며,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여 하소연하니, 통촉하신 뒤에 봉세관에게 명하여 고성학의 터무니없는 패습을 엄히 징벌하고 자신에게 다시 마름을 위촉하여 원통함을 호소하는 일이 없게 해 달라는 것이다. 증거물을 첨부한다고 하였다.

명목상으로는 마름 최재하와 비양도에 거주하는 고성학 두 사람 사이의 분쟁인 듯하나 비양도 사람들은 고성학을 대표로 내세웠을 뿐 실은 비양도 사람들과 마름간의 분쟁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마름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지인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비양도에만 해당되지 않고 당시 제주도의 상황이 다 그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소장을 살펴본 내장원경은 봉세관에게, “상세히 조사하고 공정하게 처결하라.”고 같은 달 7일자로 지시를 내리고 있다. 당시 제주도의 지세 등 제반 세금의 수취에 대해서는 『續陰晴史』 광무 5년(1901) 4월 12일(음력 2월 24일 경신)자에,

“胥吏 洪瑞淳이 서울에서 돌아오면서 度支部의 훈령을 가지고 왔다. 섬 안의 지세는 봉세관 姜鳳憲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적절하게 세금을 매기게 하였는데, 이 섬은 개벽한 이래로 아직 지세가 없었으므로 머지않아 세금을 매기게 되면 사람들이 함께 화합

39) 牒錄은 이전에 행해진 전례를 적은 기록이며, 일단 시효가 지난 문건도 뒤에 등록으로 정리하도록 되어 있었다.

40) 마름[舍音]은 본래 地主로부터 경작권을 위임 받아 관리하는 사람(『古今釋林』 40. 羅麗吏讀, 主管農庄者稱舍音, 『行用吏文』 田舍看守者 稱之舍音)을 뜻하나, 여기서는 봉세관으로부터 田地의 조사나 租稅의 징수 등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41) 把는 조세를 계산하기 위한 토지 면적의 단위로, 量田尺으로 한 자 평방의 넓이이다.

하게 될 것이나, 처음으로 시행하는 일이라 소란스러워질까 걱정된다는 것이었다. 또 內藏院의 훈령과 마패가 있었다. 봉세관으로 하여금 목사 이하의 치적, 장물취득의 여부, 간사하고 교활한 향리, 민간의 득실을 검하여 살피게 하고, 三郡의 公土, 貢馬淺場⁴²⁾의 禾稅, 畚白米·어장·鹽盆·산림 및 三郡에서 나는 소산물을 일일이 조사하여 세금을 받게 하였다. 또 갑오년에 이미 면제한 베[布]⁴³⁾도 아울러 추징하게 하였다. 이에 앞서 봉세관이 公土에 매긴 세금이 아주 무거워서 백성들의 원성이 매우 많았다. 또 이와 같이 許大한 권리를 위임하여, 온 섬 안의 파리 대가리만큼 한 아주 작은 이익도 망라하여 도리에 어긋나니, 세상 인심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많은 사람이 원망하였다.”⁴⁴⁾

라고 하였으며, 봉세관 姜鳳憲의 濫稅에 대해서는 윗책 같은 해 5월 9일(음력 3월 21일)자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 섬은 개벽한 이래로 여태까지 王稅가 없었으나 척박한 땅에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야 겨우 자급할 수가 있었다. 그 왕세가 없었기 때문에 자손이 자못 번성하여 백성들도 기꺼이 삶을 영위했는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時勢가 전과 달라서 토지의 正稅

42) 淺은 등급을 上·中·淺으로 나눌 때 맨 끝제가 된다. 따라서 淺場은 貢馬場의 가장 나쁜 곳에 재배한 곡식에 대한 세금[禾稅]이다.

43) 여기서 말하는 베[布]는 洞布稅를 말하는 듯하다. 즉, 동포는 동네에서 바치던 軍布로, 고종 때 대원군이 국가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해마다 장정 한 사람에게 군포 대신에 엽전 두 뼤씩씩 받아들었는데, 이를 洞布錢이라 하였다. 『梅泉野錄』 甲午以前(上)에 「軍役簞丁收布 流弊萬端 爲小民切骨之冤 而士族游閒終世無身役 前輩名臣亦多有議及者 而牽於流俗 終莫之行 甲子初 雲峴力任衆怨 移而均諸貴賤 一丁歲納錢二緡 謂之洞布錢」이라 하여, “군역은 장정(병역의무자)을 軍籍에 올려 군포를 거두는 것인데, 전해 오는 폐단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백성들의 골수에 사무치는 폐단이 되었다. 그러나 사대부 집안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身役이 없었다. 선배 名臣들도 이를 비방하며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으나 전해 오는 습속에 구애되어 끝내 개혁을 단행하지는 못하였다. 갑자년(고종 즉위년, 1864) 초에 대원군이 물 사람의 원망을 풀어주기 위해 개선하여 귀천에 고르게 장정 한 사람 당 2緡(20냥, 200錢)의 돈을 바치게 하고 이를 동포전이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洞布稅는 제주도에는 적용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제도가 폐지된 갑오경장 이후에 가서야 제주도에도 동포세가 시행되었다. 이 때는 戶를 단위로 하였으며, 그 법정 세율은 1호당 300文이었다. 『濟州事情』, 1906, 24~25쪽.

44) 「…洪吏瑞淳自京還 持度支訓令而來 島中地稅 使捧稅官美鳳憲調查 量宜執稅 此島自開關以來 未有地稅 早晚執稅 人所共和而事係朋行 恐致紛紜 又有內藏院訓令及馬牌 使捧稅官 兼察牧使以下治贖臧否·奸鄉猾吏·民間得失 三郡公土·貢馬淺場禾稅·畚白米·漁場·鹽盆·森林及三郡所產 一一調查捧稅 又甲午已蠲之布 并令追徵 前此捧稅官之公土執稅極重 民怨甚多 又委此許大權利 一島內蠅頭微利 網羅無道 物情疑懼嗷嗷…」.

를 실어다 바치지 않을 수 없고, 백성들도 이를 알았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하는 자가 없었다. 봉세관 강봉헌은 內藏卿 李容翊의 뜻을 받들어, 가혹하게 수취하는 일에만 오로지 마음을 쏟아 公土라 칭하며 民田을 강제로 빼앗았다. 또 人家의 칸수를 살살이 조사하여 뒷간에까지 세금을 매겼다. 마을이나 산 위의 수목에도 모두 세금을 정하여, 큰 나무는 수십 냥, 작아도 5,6냥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갈대와 잡초도 모두 면할 수 없었다. 어망새는 한 곳이 8백 냥에 이르렀다. 또 교인과 서로 통하여 公土의 마름 [畝音]이나 어선·어망의 수세는 모두 교인들에게 맡겼다. 어떤 사람이 물고기 10여 마리를 잡았다면, 교인이 그 반을 빼앗아 상납하였으며, 계란 수십 개를 모은 사람이 있으면, 문득 그 반을 빼앗아 계란세로 처리하였다. 소·말·닭·개도 모두 세금을 면하지 못하였다. 이런 가운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산천초목이나 새와 짐승, 물고기와 자라가 모두 난리를 만나, 삼읍에는 돈이 잘 돌지 않고, 우마와 토지의 값이 내려서 이와 같이 떠들썩하게 어지러우니, 어찌 소동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⁴⁵⁾

위 내용 중의 王稅란 지금의 國稅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시대 제주도에 는 어느 정도의 지방세는 부과되었으나 국세는 없었고 공물을 바치는 것으로 그 에 대신하였다. 그러나 갑오경장 이후 제주도에도 국세가 부과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洞布稅·場稅·海稅·船稅·庖稅·烙馬稅·官有地稅⁴⁶⁾ 등이 그것이다. 특히 제주도에 파견되었던 봉세관 강봉헌은 제주 지역의 수세 과정에서 많은 무 리를 빚었는데, 이것이 광무 5년(1901) 辛丑民亂 발발의 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 다. 이 때의 제주도민은 천주교도의 횡포와 아울러 봉세관의 탐학⁴⁷⁾에 항거하여

45) 「...此島自開闢以來 素無王稅 瘠土勤耕 僅能自給 以其無稅之故 生殖頗繁 民皆樂生 到今時勢異前 土地正稅不可不輸納 民亦知之 無異言者 而捧稅官 姜鳳憲 承內藏卿李容翊之意 專心虐斂爲事 稱以公土 勒奪民田 又人家間數摘奸 至園則皆執稅村里及山上樹木皆定稅 大木數十兩 小不下五六兩 蘆葦·雜草皆不得免 漁網稅一處至八百兩 又與教人相通 公土 畝音及漁船·漁網收稅 皆付教人有人捉得十餘頭魚 教人奪其半 以爲上納 鷄卵有蓄數十個者 輒奪其半 以爲鷄卵稅 牛馬雞犬皆不免稅 此中人云 山川草木·鳥獸魚鼈 皆逢亂難 三邑錢竭 牛馬田土價爲之減如此 屢擾 安得不起鬧乎」.

46) 『濟州事情』, 1906, 17쪽.

47) 참고로 당시 제주도에 파견되었던 察理使 黃蒼淵이 천주교인과 봉세관의 작폐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고한 내용이 「皇城新聞」 광무 5년 6월 21일(음력 5월 초6일)자에 게재되었는데, 그 내용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天主教人 作弊件 ①擅殺人命호되 官不得拿獲檢屍事 ②私奪人之婦女호되 民不得開口事 ③年久賣買田宅이 倍從於時價者를 以本價勒奪事 ④平民을 傳令捉致호야 結縛毆打事 ⑤平民處所報則不報호고 所推則勒推事 ⑥乘夜率黨호야 奪取民物事 ⑦橫行村閭호야 勒任教冊호고 討索錢穀事 ⑧行路逢人에 無端執頭호고 勒任教冊事 他人墳墓禁制內에 無難

민란을 일으켰는데, 프랑스 함대가 파견될 정도였다.

당시 봉세관 강봉헌은 내장원의 지시에 따라 염분세·어장세·산림세 등 온갖 잡세를 조사하여 수세하였는데, 이는 왕실 재정의 충당이라는 명목으로 내장원에서 징수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강봉헌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 교인을 마름[舍音]으로 정하여 그 일을 담당케 함으로써 그 폐단이 복잡한 형태로 확대되었던 것이다. 경작권을 빼앗긴 농민들과 각종 산물의 유통을 담당하던 상인들의 피해가 컸음은 말할 것도 없다.

4. 調査成冊

〈表題〉 癸卯三月二十五日 調査成冊(17cm×22cm)

飛揚島

〈內表題〉 癸卯三月二十五日 調査成冊

飛揚島

入葬하고 教徒墳墓엔 雖禁外嚴禁事 ⑨招聚徒黨하고 必口誑讞之怨事 ⑩任意斫取空地樹木事 ⑪自捧稅官所出舍音하고 奪耕平民先執納稅之田事 ⑫符同捧稅官하고 爲執稅監色하고 討索錢兩事 ⑬自官捉去之罪人을 稱以敎人하고 中路奪去事 ⑭敎人之犯罪者를 官或捉囚則稱以敎人是法國人하고 率黨劫囚以去事 ⑮敎人與平民이 若有言詰則執言於敎師하고 謂之毀敎하고 率徒捉去用刑事 ⑯設刑具鞭笞及拘留間하고 捉致平民用刑牢囚事.

○捧稅官 作弊件 ①有稅公土를 更執濫捧事 ②有主公土를 出舍音奪耕事 ③派送監色을 專用西敎人하고 與無賴輩混執公私土討索錢兩事 ④公土舍音을 專用敎人하고 抑奪窮民先執之田事 ⑤文廟位土及陳禁之地를 出舍音更執卜奪取事 ⑥墓松巷樹園木青草茅草에 徵稅事 ⑦漁基漁網設始濫捧事 ⑧各浦所產雜物을 以敎人執稅定都買하고 使商民及本主로 不得買賣事 ⑨火田舊基를 稱以新基하고 再執稅討賂徵捧事 ⑩家位를 逐間調査하고 稱云一間稅爲一兩하고 討索錢兩事 ⑪公土之已入公下區處者를 更爲徵稅事 ⑫牧養委員이 私鑄烙印하고 盜取牛隻事.

다음은 찰리사 황기연이 작성하여 三郡 各面에 반포했던 각종 稅弊의 革罷節目이다. (『各司曆錄』 21, 全羅道篇 4)

①各公土原摠外 疊徵勿施事. ②各舍音 一併勿施事. ③茅草·青草稅 勿施事. ④鹽田·鹽釜原稅外 勿施事. ⑤漁基·漁網稅 勿施事. ⑥各浦口主人及口文 勿施事. ⑦進上櫃子木及橋木斫伐 禁斷事 ⑧松木·雜木稅 勿施事. ⑨鎮將·船色革罷事 ⑩校中願納掌議 勿許差出事 ⑪各果園·各鎮堡外 家幕稅勿施事. ⑫各場稅米元摠外 勿施事. ⑬牧養委員革罷事 ⑭牛島·加波島·吾照里植山峰原稅外 勿施事. ⑮敎弊諸條 報政府定約條事 ⑯各樣公土補公折授者 勿爲舉論事 ⑰牛屠稅勿施事. ⑱知歸島元稅外 勿施事. ⑲大靜商務社 永爲革罷事 ⑳無論田畜 有盜買者 該土與畜物 還其本主 價錢勿施事.

- 一等 徐奉圭 車種 一斗
 - ・ 任昌益 車 十五斗
 - ・ 同 人 車 一斗
 - ・ 徐奉圭 車 一斗 三刀
 - ・ 高成鶴 車 十斗
 - ・ 任昌益 車 一斗
 - ・ 同 人 車 四斗
 - ・ 高成鶴 車 四斗
 - ・ 徐奉圭 車 三斗
 - ・ 任昌益 車 十斗
 - ・ 高成鶴 車 四斗
 - ・ 金別監 車 五斗
 - ・ 金連卜 車 六斗
 - ・ 高成鶴 車 五斗
 - ・ 同 人 車 三斗
 - ・ 徐奉圭 車 五斗
 - ・ 高奉申 車 二斗 五刀
 - ・ 高海松 車 二斗 五刀
 - ・ 金別監 車 二斗
 - ・ 高夢後 車 五刀
 - ・ 趙而春 車 六斗
 - ・ 李石百 車 八斗
 - ・ 同 人 車 八斗
 - ・ 金允久 車 二斗
 - ・ 高成鶴 車 三斗
 - ・ 李石伯 車 七斗
 - ・ 任昌益 車 三斗
- 二等 金百柵 車 一斗
 - ・ 同 人 車 一斗
 - ・ 金時柵 車 三斗 五刀
 - ・ 朴守萬 車 一斗 五刀
- ・ 金石集 車 四斗
- ・ 金連石 車 二刀
- ・ 金連卜 車 三刀
- ・ 文京興 車 八斗
- 三等 金己凡 車 十五斗
 - ・ 朴昌祚 車 六斗
 - ・ 文才官 車 三斗
 - ・ 李海用 車 四斗
 - ・ 任云鶴 車 八斗
 - ・ 朴昌玉 車 四斗
 - ・ 尹乃卜 車 二斗 八刀
 - ・ 任百松 車 二斗 八刀
 - ・ 孔乙生 車 二斗 八刀
 - ・ 高奉申 車 二斗 八刀
 - ・ 高渭天 車 二斗
 - ・ 朴昌玉 車 七斗
 - ・ 高明圭 車 二斗 五刀
 - ・ 梁在天 車 二斗
 - ・ 任昌益 車 四斗
 - ・ 孔乙生 車 二斗 五刀
 - ・ 文京興 車 一斗 五刀
 - ・ 高成鶴 車 八斗
 - ・ 高友反 車 四斗
 - ・ 張致文 車 四斗 五刀
 - ・ 高成鶴 車 十四斗
- 四等 高 松 車 五斗
 - ・ 張汗用 車 三斗
 - ・ 高海松 車 一斗 五刀
 - ・ 高百鶴 車 一斗 五刀
 - ・ 張致柵 車 一斗 五刀
 - ・ 金連卜 車 二斗

- ・ 高 松 车 三斗
- ・ 高成鶴 车 三斗
- ・ 金己凡 车 三斗
- ・ 秦太允 车 一斗 二刀
- ・ 申百弘 车 一斗
- ・ 徐奉圭 车 二斗
- ・ 秦鶴世 车 五斗
- ・ 朴明生 车 一斗
- ・ 高在天 车 八刀
- ・ 張成好 车 二斗
- ・ 張平好 车 三斗
- ・ 張辰天 车 三斗
- ・ 高京弘 车 一斗 五刀
- ・ 高啓芑 车 五刀
- ・ 張石伯 车 五斗
- ・ 白仁鶴 车 三斗
- ・ 同 人 车 三斗
- ・ 高明好 车 一斗 五刀
- ・ 李 文 车 二斗
- ・ 張萬式 车 二斗
- 五等 高完石 车 一斗 五刀
- ・ 金德甫 车 一斗
- ・ 任昌益 车 三斗
- ・ 同 人 车 二斗
- ・ 同 人 车 五斗
- ・ 張萬式 车 一斗 五刀
- ・ 金己凡 车 一斗
- ・ 同 人 车 一斗
- ・ 張京好 车 一斗 五刀
- ・ 張致文 车 二斗
- ・ 朴太柵 车 五斗
- ・ 李士俊 车 三斗 五刀
- ・ 金達弘 车 二斗 五刀
- ・ 金甲生 车 三斗 五刀
- ・ 姜丁玉 车 三斗
- ・ 張致生 车 六斗
- ・ 李信柵 车 二斗 五刀
- ・ 車京東 车 一斗 五刀
- ・ 張平淑 车 四斗
- ・ 金用甲 车 五斗
- ・ 張 柵 车 二斗
- ・ 同 人 车 二斗
- ・ 尹京淑 车 三斗 五刀
- ・ 任生壹 车 五刀
- ・ 洪昌官 车 三刀
- ・ 張致文 车 四斗
- ・ 梁時用 车 一斗
- ・ 高平式 车 一斗
- ・ 張萬八 车 二斗
- ・ 高平石 车 三斗
- ・ 洪致世 车 三斗
- ・ 張弼弘 车 一斗 五刀
- ・ 梁成辰 车 三斗
- ・ 韓口元 车 三刀
- ・ 任昌益 车 五斗
- ・ 尹京仁 车 十三斗
- ・ 朴永七 车 三斗
- ・ 左贊白 车 一斗 五刀
- ・ 張之元 车 十斗
- ・ 張公淡 车 一斗
- ・ 白元鶴 车 二斗
- ・ 張成用 车 四斗

- 同 人 车 二斗
- 高京官 车 三斗 二刀
- 六等 高 松 车 一斗
- 曹顯承 车 一斗
- 洪哲連 车 二刀
- 任雲鶴 车 四斗
- 里 任 车 一斗
- 洪己正 车 一斗
- 張汝確 车 四斗
- 朴致公 车 三斗
- 金仕九 车 一斗
- 金明尾 车 八斗
- 高斗吉 车 一斗 五刀
- 安京俊 车 四斗
- 韓平泉 车 一斗
- 高有司 车 五斗
- 金己凡 车 一斗 五刀
- 同 人 车 二斗
- 洪哲連 车 一斗
- 車雲鶴 车 五刀
- 李三文 车 二斗
- 任啓平 车 四斗
- 金萬石 车 一斗
- 李仕辰 车 二斗
- 金萬石 车 一斗
- 任昌益 车 三斗
- 高申平 车 三斗
- 洪仕萬 车 三刀
- 白元鶴 车 四斗 五刀
- 高在白 车 二斗
- 朴萬用 车 四斗 (三庫)
- 梁昌俊 车 四斗
- 朴斤白 车 四斗
- 梁 用 车 五斗
- 同 人 车 五斗
- 李貴玄 车 二斗
- 朴申百 车 三斗
- 金乙俊 车 五斗
- 朴以式 车 二斗
- 高光化 车 三斗
- 金斤百 车 四斗
- 鄭申松 车 三斗
- 梁申芻 车 四斗
- 趙永卜 车 五斗
- 安京俊 车 二斗
- 李才百 车 三斗
- 李達平 车 二斗
- 高京松 车 一斗
- 張乙用 车 二斗
- 李時亨 车 五刀
- 朴仁柵 车 五刀
- 高致柵 车 一斗 五刀
- 姜甲春 车 一斗 五刀
- 李才吉 车 一斗 五刀
- 李官百 车 一斗
- 洪千連 车 一斗
- 金石宗 车 三刀
- 金連卜 车 五刀
- 申石弘 车 三刀

已上 車種 參拾柒石 貳斗 參刀

兼使(濟州裁判所印 2.3cm×2.3cm)

(題辭) 此土을 調査則 以爲先納호야 文跡이 見在호이 此島는 永爲勿施호니 以此後考向事 十七日

위 『조사성책』의 표지에는 우측으로부터 癸卯 三月二十五日 調査成冊 飛揚島⁴⁸⁾라 써어 있다. 계묘년은 광무 7년(1903)이며, 이 해 3월 25일에 비양도 소재 토지의 등급과 경작자, 작물, 면적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록하고 책으로 엮은 것이다. 말미에는 작물[車種]과 총 재배면적이 37石 2斗 3刀(刀는 升과 같다)로 기록되어 있고, 兼使(행목사 겸 재판소판사)의 판결 내용인 題辭가 써어 있다. 즉, 제사는 같은 달 17일자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비양도의 토지를 조사해 보았더니, 먼저 납부했던 문적이 현존하였다. 그러므로, 이 섬의 전세는 영원히 시행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니, 이 조사성책을 가지고 뒤에 증거로 삼으라”고 하였다. 『조사성책』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등 급	필 지	면적 (지기)	작 물
1등전	27	8섬 2말 8되	車種(麥種)
2등전	8	1섬 4말 5되	·
3등전	21	6섬 13말 2되	·
4등전	26	3섬 7말 9되	·
5등전	44	8섬 7말 8되	·
6등전	57	9섬 1되	·
계	183	437섬 6말 3되	

<표>에 의하면, 토지는 6등급에 총 183필지인데, 1등전이 27필지에 8섬 2말 8되지기이고, 2등전은 8필지에 1섬 4말 5되지기, 3등전은 21필지에 6섬 13말 2되지기, 4등전은 26필지에 3섬 7말 9되지기, 5등전은 44필지에 8섬 7말 8되지기, 6등전은 57필지에 9섬 1되지기이다. 면적이 가장 큰 밭은 15마지기, 가장 작은 밭은 2되지기였다. 작물은 모두 車種(麥種)이다. 그런데 『조사성책』에 나타난 전체의 마지기는 37섬 2말 3되로 계산되었으나 실제 내용을 합산해 보면 37섬 6말 3되로 4말의

48) 표지에는 濟州牧印(4.5cm×4.5cm)과 洞號印(마을인, 4.5cm×8.2cm) 각 1곳, 내용에는 濟州牧印이 41곳에 날인되어 있다.

차이가 난다.

소유자(경작자)는 里任 명의의 토지가 있는가 하면, 등급에 관계없이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자도 많았다. 즉, 두 필지 이상을 소유한 자는 25명이며 그 25명 소유의 합계는 79필지이다. 이를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경작자의 총수는 129명이다. 두 필지 이상 소유한 25명을 『조사성책』에 기록된 순서대로 가나다순으로 그 성명과 필지의 수를 나열해 보면, 高松 3, 高奉申 2, 高成鶴 9, 高海松 2, 孔乙生 2, 金己凡 6, 金萬石 2, 金百柵 2, 金別監 2, 金連卜 4, 文京興 2, 朴昌玉 2, 白元鶴 2, 白仁鶴 2, 徐奉圭 5, 安京俊 2, 梁用 2, 李石伯(百) 3, 任雲(云)鶴 2, 任昌益 12, 張柵 2, 張萬式 2, 張成用 2, 張致文 3, 洪哲連 2 등이다. 그리고 成冊에 수록된 姓氏는 23개 姓(姜·高·孔·金·文·朴·白·徐·申·安·梁·尹·李·任·張·鄭·趙·曹·左·秦·車·韓·洪)인데, 이들이 모두 비양도에 들어가 살았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이 『조사성책』에 앞서 光武 4년(1900) 정월에 봉세관 강봉헌이 조사하여 보고한 『濟州郡各公土調査成冊』⁴⁹⁾ 各鎮條에 의하면 비양도의 경우, 牟田[보리밭] 5섬 10마지기의 賭錢⁵⁰⁾이 80냥, 茅草田의 賭錢이 9냥, 家基 11소의 賭錢이 11냥으로 각각 책정되었는데,⁵¹⁾ 그 중 家基가 11좌로 나타나고 있고, 또 앞서 본 비양도 사람들이 올린 등장에는 ‘十室殘洞’이라 한 것으로 보아 토지 소유자 대부분이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우리는 비양도와 관련된 5건의 문건을 살펴보았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비양도는 오늘날 행정구역으로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비양리에 해당한다. 비양도는 예전에 차귀도와 함께 지정된 산림 즉, 箭竹을 보호하기 위해 농지의 개간이나 분묘의 설치를 금하던 지역이었다. 전죽은 진상품의 하나였으며, 이 때문에 전

49) 표제는 光武四年庚子正月日 『濟州郡各公土調査成冊』이라 하였다.

50) 賭錢은 稅로 무는 돈이다.

51) 光武四年 庚子 正月 日 『濟州郡各公土調査成冊』 舊右面 各鎮條에 「飛揚島 牟田 五石十斗落 賭錢 八十兩 又 茅草田 賭錢 九兩 又 家基 十一坐 賭錢 十一兩」이라 하였다.

죽을 배어서 운반하기 위해 혹은 미역 등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인근 마을 사람들의 왕래도 끊이지 않았다. 그 때문에 때로는 비양도를 왕래하던 선박들이 漂失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났고, 심지어는 전죽을 베고 운반하는 노역을 피하기 위해 불을 놓아 태우거나 한창 푸르렀을 때 배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비양도의 생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고려 목종 때의 두 차례에 걸친 화산폭발 기록과 관련지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대세이다. 물론 비양도 외에도 가파도, 군산 등이 거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질학적인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조명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지질학적 분석 결과에 따라 현재 중구난방으로 거명되고 있는 지명들을 어느 한 곳으로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비양도의 개간이 허락된 것은 비양도에 입주한 사람들이 관청에 제출한 等狀이나 절목 내용을 통해서 갑신년 즉, 고종 21년(1884)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입주하여 개간하면서부터는 해산물이나 개간지 획득 문제로 인근 마을 사람들과의 분쟁이 잦았고, 또 내장원에서 봉세관을 파견하여 각종의 세금을 징수하면서부터는 그 부당성을 호소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더욱이 강봉헌이 교인을 마름으로 파견하면서 교인과의 마찰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당시 제주도 전역에 해당되는 현상이었다.